

₩

÷

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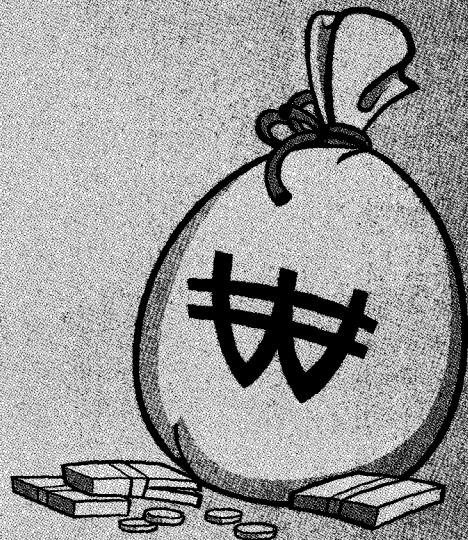
×

±

₩

e비즈니스 .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 지원 내용

중소법인세 감면 3년 연장



## e비즈니스 .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 지원 내용

### 1.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의 손금 산입(조세특례제한법 제4조)

- 중소기업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함.
- 대상 자산 :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, ERP 시스템, 전자상거래설비,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(POS),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, 공급망관리 시스템 설비,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설비
- 손금산입 범위 :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 등의 가액의 20%
- 익금 환입
  - 3년거치 3년분할 익금 환입
  -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지 않은 경우는 3년거치 후 일시 익금 환입

### 2.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(조세특례제한법 제5조)

- 사업용 자산,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,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의 경우 투자금액의 3%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
- 2003년 12월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한함
- 이 경우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,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한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 공제(동법 제5조 2항, 3항, 시행령 제4조 3항)
  - ※ (총투자금액 × 작업진행률과 당해 과세연도 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선택) - (기 공제받은 투자금액 + 세액 공제 받기전 투자금액 × 작업진행률)

### 3. 중소기업 ERP설비 투자금액의 손금 산입(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)

-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, 산업기술기반조성법,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출연금을 다음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 가능

- 대상 설비
- ERP 설비
  - 전자상거래 설비
  - 생산설비 전자화, 생산공정 정보화 시스템
  - 기업간 정보공유 시스템
  - 단위업무 통합지원 소프트웨어

### 4.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 감면(조세특례제한법 제6조)

- 감면 대상
  - 창업 중소기업 :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
  - 창업 벤처 중소기업 :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 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
- 업종 요건
  - 제조업, 광업, 부가통신업, 연구 및 개발업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전문디자인업, 방송업, 엔지니어링 사업,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업, 물류산업
- 감면 내용
  - 소득세 · 법인세 : 창업(벤처확인) 후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5년간 50% 세액 감면

### 5.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(조세특례제한법 제7조)

- 감면 대상
  -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소기업과 지식기반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  -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
- 업종 요건
  - 제조업, 광업, 건설업, 물류산업, 여객운송업, 어업, 도매업, 소매업, 전기통신업, 연구 및 개발업, 방송업, 엔지니어링사업,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등

• 감면 내용

소재지	기업구분	업종여부	세액감면
수도권	소기업	제조, 건설 등 11개업종	20%
		도매, 소매, 의료, 자동차 정비, 관광	10%
	중소기업	지식기반산업	20%
지방	중소기업	제조 등 15개 업종	30%
		도매, 소매 등	10%

6.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 공제(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3)

- 세액 공제 대상
  - 중소기업이 전자입찰 방식으로 구매하고, 전자결재방식으로 결제하는 금액
- 공제액
  - 2003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분에 대하여 구매금액의 0.5%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

7.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 산입(조세특례제한법 제9조)

- 지원 내용
  - 연구 및 인력 개발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 개발 준비금을 계상한 때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
- 대상 : 내국기업(소비성 서비스업 제외)
- 성정합도 : 수입금액의 3%~5%
- 환입 : 사용분은 손금 산입 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부터 3년간 균등 환입(미사용분은 일시 환입)

8. 연구·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(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)

- 대상 : 내국기업(소비성 서비스업 제외)
- 공제방법 : 연구·인력 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방법 중 선택하여 세액 공제
  - 당해년도 연구·인력 개발비 총발생액의 15%를 공제
  - 직전 4년간 연구·인력 개발비 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%를 공제(대기업은 40% 공제)
- 세액 공제 대상 비용(별표6)
  - 연구 개발의 경우 : 연구 개발 전담부서의 인건비,

- 재료비, 시설 입차 및 이용료, 특정연구 기관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
- 인력 개발의 경우 :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·대학 등에 대한 위탁교육훈련비, 직업훈련기관 위탁훈련비 등

9.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 공제(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)

- 대상 시설
  -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·정보화 시설
  - 제조업의 첨단기술 설비
  - ERP설비, 전자상거래 설비, 공급망 관리·고객관리 시스템 설비
- 지원내용
  - 투자금액의 3%(중소기업은 7%)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

10. 임시 투자 세액 공제(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)

- 공제 대상
  - 제조업, 도매업, 소매업, 전기통신업, 연구 및 개발업, 전문디자인업, 엔지니어링사업,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, 컴퓨터학원, 물류산업 등(시행령 23조 1항 참조)
- 대상 시설
  - 도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의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
  - 기타업종의 사업용 자산
- 지원 내용
  - 2003년 6월 30일까지 투자하는 투자금액의 10% 세액 공제

11.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소득세 세액 공제(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)

- 지원 내용 : POS 시스템 설치한 사업자 또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자는 다음의 방법 중 선택하여 세액 공제 가능
  -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,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

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
 -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전자상거래등 수입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
**12. 전자화폐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(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)**

- 대상사업자 (법인인은 제외하고 개인 사업자만 해당)
  - 소매업, 음식점업, 여객운송업 등, 소비자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등
- 공제 내용
  - 전자화폐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 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%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

**13. 연구조합에 납부하는 회원회비의 손금 산입(법인세법 제21조)**

- 산업기술연구조합 회원사가 연구조합에 납부하는

회비는 각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

**14. 연구조합의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법인세 공제 (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)**

-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%를 법인세에서 공제

**15. 연구조합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(관세법 제90조)**

-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산업기술의 연구·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하여는 관세80% 감면중소기업 서비스업종 28개 분야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제도가 3년 동안 더 연장돼 시행된다. 또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(제조업 기준)을 초과 한 중소기업도 최소 3년 동안은 기존에 받던 금융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.

**중소 법인세 감면 3년 연장**

중소기업 서비스업종 28개 분야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가 3년 동안 더 연장돼 시행된다.

또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(제조업 기준)을 초과 한 중소기업도 최소 3년 동안은 기존에 받던 금융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.

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,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활성화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.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최근 경기침체와 외국인 고용허가제 논란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.

재정경제부는 올해 말 일몰기간이 돌아오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공제제 도를 3년 더 연장해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기술서비스업, 영화산업, 전문디자인업, 관광산업, 포장, 충전업 등 서비스 분야 28개 업종은 2006

년까지 법인세액 가운데 10 ~ 30%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.

대신 중소기업들이 잘 이용하지 않던 투자준비금(사업용 자산가액 대비 20%) 손금산입 규정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.

재경부는 또 기업은행법을 개정해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을 초과해 도 최소 3년 동안은 중소기업이 받던 금융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.

재경부는 기업은행법 개정안을 올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한 뒤 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.

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일반 보증비율(현행 75 ~ 85%)도 무역금융이나 설비투자시 보증 수준인 90% 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